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19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5월 2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21. 5. 21. ~ 2021. 6. 4.(15일)
- 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(원)	체납자 주소
1	주식회사 화영플라워	170111-0591***	0178200274100010774	1,030,000	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 길
2	이*희	1976.06.10.	0178200274100010777	10,300,000	경북 칠곡군 북삼읍 안산 2 길
3	전*표	1961.07.16.	0178200274100010973	15,450,000	경북 구미시 인동 21 길
4	노*직	1982.02.19.	0178200274100008152	927,000	대구 서구 국제보상로 38 길
5	김*기	1977.03.01.	0178200274100001132	945,000	경북 구미시 옥계북로
6	신*수	1963.07.09.	0178210274100001098	3,000,000	대구 동구 화랑로 100 길
7	조*용	1992.11.11.	0178210274100001095	1,000,000	울산 남구 신정로 78 번길

- 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, 1207)
- 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

-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